

남양주도시공사 비상임이사 모집 재공고

남양주도시공사에서 혁신적인 사고와 전문적인 시견을 갖춘 유능한 인사를 공사 비상임이사로 모시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1월 14일

남양주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

1. 임용 예정 직위 및 인원: 비상임이사 1인

2. 임용 기간: 임용일로부터 3년

3. 직무내용

- 「남양주도시공사 이사회 운영규정」에 따른 안건 심의 · 의결
 - 공사의 사업계획 및 기본 방침 결정에 관한 사항
 - 예산과 결산의 승인
 - 정관 변경
 - 조직 ·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등

4. 지원자격

- 가. 공통기준(지방공기업법 제60조의 “임직원의 결격사유”에 해당되지 않는 자)

- 제60조(임직원의 결격사유)(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)
1. 미성년자
 2.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3. 「지방공기업법」 제5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4. 「지방공기업법」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5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

나. 개별기준

- 비상임이사(「남양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」 및 「정관」 제9조)

- 가. 세무 및 회계분야 전문가
- 나. 경영 및 시설물 관리 분야 전문가
- 다. 법률 전문가

※ 관련 분야 학위 취득 · 경력 · 자격증 소지자 우대

※ 공사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한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환경변화 대응 능력 및 조직의 역량 강화를 선도할 수 있는 리더십 구비

- ※ 단, 「공직자윤리법」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로서 취업제한기간에 해당하는 응모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취업심사결과 ‘취업제한’ 또는 ‘취업불승인’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원으로 임용될 수 없음
- ※ 임명 후 ‘공통기준’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함. 이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함

5. 임용자의 보수: 남양주도시공사 이사회 운영규정에 따름

※ 별도의 보수는 없으며,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무수당 및 회의 참석수당 지급

6. 지원 서류 접수

- 가. 접수기간: 2026. 1. 14.(수)~1. 29.(목) (접수시간 : 09:00~18:00)

- 나. 접수방법: 방문, 우편접수, 이메일접수

※ 유의사항: 우편접수(이메일 포함)는 접수마감일 18:00 도착분에 한하며, 이메일 제출 시 자필 서명 후 스캔하여 PDF 형식 1개의 파일로 제출 후 유선 확인
방문접수의 경우, 점심시간(12:00~13:00) 및 토 · 일요일 · 공휴일 접수 불가

다. 접수처: [12284]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지금로36번길 21-8, 906호
남양주도시공사 경영기획실 인사성과부
[이메일] nyjncuc@naver.com

라. 제출서류

- 1) 지원서(사진첨부) 1부.
- 2) 자기소개서 1부.(소정양식 5매 이내)
- 3) 최종학력증명서(학위증명서 포함) 1부.
- 4) 경력증명서 1부.
- 5)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.
- 6) 기타 증빙관련 서류(해당자에 한함).

* 소정 양식은 공사홈페이지 (<http://ncuc.or.kr>)에서 내려받아 작성

7. 심사방법 및 합격자 발표

가. 서류심사: 응모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심사(2배수)

심사 항목

- 조직화합과 경영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기업경영 능력
- 대규모 조직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
- 경영혁신을 위한 개혁 지향적인 의지와 추진력
- 관련 사업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이해력
- 기업성과 공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

* 서류심사 합격자(임원후보자)에 대해서는 별도의 발표가 없으며 임명권자의 최종 임용대상자 확정 시 개별 연락함

나. 최종합격자 통보: 개별 통보

- 1) 서류심사 결과 임용예정인원의 2배수 합격 및 추천(→임명권자 '남양주시장')
- 2) 최초 공개모집에서 응모자 수가 결원예정직위수의 2배수에 미달하거나,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, 임명권자가 임원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때에는 재공고 실시

* 지방공기업법 제58조 및 동 시행령 제56조의 4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는 임명권자에게 추천 하며, 임명권자가 최종 임용대상자를 결정함

8. 기타사항

가. 당사는 「공직자윤리법」 제17조제1항에 의한 취업제한 기관입니다.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동안 소속하였던 부서나 기관이 당사의 업무와

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퇴직공직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이 없으면 취업할 수 없습니다.

- 나. 최초 공개모집에서 응모자 수가 결원예정직위수의 2배수에 미달하거나,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, 임명권자가 임원 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때에는 최초의 공개모집과 동일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재공고를 실시합니다.
- 다.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하여 임원후보자를 순위없이 복수로 추천합니다. 단, 재공고를 실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응모자가 결원 예정 직위 수의 2배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제외.
- 라. 제출된 서류는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.
- 마.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는 등 부정 합격이 확인된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, 적발된 날로부터 최소 5년 이상 응시가 제한됩니다.
- 바. 우편접수(이메일 포함) 시 기간 내 수취된 지원서에 한하여 접수되오니 반드시 유선으로 수령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사. 상기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일정에 대해서는 개별 통보합니다.
- 아.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공사 제규정을 준용합니다.
- 자.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도시공사 경영기획실 인사성과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(☎ 031-560-1031)